

제5조제2항 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무국장”으로, “재산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하며, 동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 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또는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제5항제1호 중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그밖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②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 및 부과대상기간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  
 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설  
 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방재교육을 수행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일반시민에게 공  
 개한다.

②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 2일
  2. 매주 월요일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③체험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공휴일 10:00부터 16: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10:00부터 16:00까지

④체험관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2시간전까지로 한다.

⑤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제3항의 개관시간 및 제4항의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관시간 또는 매표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4조(이용대상자) ①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체험시설의 보호 및 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시·도민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방법 등) ①체험관의 이용은 10인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인이 동반할 수 있으며 20명 초과시에는 25명마다 1인씩 추가되어야 한다.

④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등을 예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회수 및 입장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체험관의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 음주 및 취식

2. 안내요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

4.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

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체험관 이용료) ①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2세 이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등에 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체험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일반시민에게 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체험관 이용권) ①시장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관 이용권을 발행한다.

②체험관 이용권의 규격, 발행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험관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체(10인 이상)	
어 른	700원	550원	19세 ~ 64세
청소년 및 군경	300원	250원	청소년 : 13세 ~ 18세 군 경 : 하사이하 군인, 의무경찰 및 전 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및 노인	무 료	무 료	12세이하 및 65세이상

###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심의”라 함은 회의 개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보화정책회의)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